

의안번호	2206615
의 퇴 인	박성민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3.
추 계 번호	24A5984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(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등)	안 제13조제2항 ¹⁾ 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(제1항) 안 제28조의5제4항 ²⁾ 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3항 ³⁾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28조의4제7항 (지식산업센터의 분양등)	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게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나 입주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·대장,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28조의5제3항· 제4항·제5항 및 제7항 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승인 등)	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입주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(제3항 및 제4항) 시장·군수·또는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주승인 등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(제5항)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아닌 다른 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(제7항)	의무규정
4	안 제28조의6제4항 (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)	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·점검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51조제3항 (권한의 위임·위탁)	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1) 안 제13조(공장설립등의 승인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

1의2. 제28조의5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(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8조의4제7항 (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)	
3	안 제28조의5제3항·제4항·제5항 및 제7항 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승인 등)	
4	안 제28조의6제4항 (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)	
5	안 제51조제3항 (권한의 위임·위탁)	

2.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
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·인가·면허 등을 받은 경우

2) 안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승인 등)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제조업 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.

3) 안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승인 등)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(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입주에 관한 승인(이하 “입주승인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하며, 승인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. (단서 생략)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한 부적격 입주 및 투기 등을 방지하고⁴⁾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·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주·공장설립·사업개시 및 임대 과정에 대한 신고 및 승인 신청 의무를 신설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·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
 -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입주를 승인받도록 하고(안 제28조의5제3항 및 제4항), 이후 제조업을 위한 공장설립이 완료된 경우 완료신고, 非제조업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이 완료된 경우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(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)
 - －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28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의5제5항)
 -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아닌 다른 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(안 제28조의5제7항)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나 입주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서류를 조사·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28조의4제7항),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·점검하도록 규정(안 제28조의6제4항)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1조제3항)
- 개정안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, 공장설립 완료, 사업 개시 및 시설 임대 등에 대한 승인 신청 및 신고 사항을 검토하고, 입주업체의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·점검하는 경우 관리

4) “지식산업센터서 웬 보험판매?...허술한 관리에 불법 입주”, SBS, 2024.1.30.
“지식산업센터,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”, 국제뉴스, 2021.10.5.

인력의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·관리운영비 또는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등이 발생하여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

- 동 법안 및 그동안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법안⁵⁾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인력·예산 등 관리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⁶⁾을 고려할 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입주업체 현황 점검을 의무화할 경우 다수의 기업체가 입주한 지식산업센터 소재 시·군·구에서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시·군·구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해 ①인력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제반비용이나 ②해당 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탁사업비가 될 것이나, 현 시점에서 시·군·구별 추가 인력 채용 필요성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추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 또한 부재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시·군·구가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인력 추가 채용의 필요성은 관할 구역 내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규모와 입주업체의 수 등에 따라 시·군·구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나, 각 시·군·구의 인력 운영 현황이나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인력 추가 배치 수요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
 - 관내 소규모 지식산업센터만 소재하여 기존 담당 인력만으로도 개정안에 따른 업무를

5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22773호, 2023.6.20.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)으로,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”하도록 규정하였음

6) 지방자치단체 제출 의견(발췌)

구분(의견제출일자)	의견 주요내용
남양주시 (2023.7.11.) ¹⁾	• (인력·예산 등 관리부담 증가)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호실수가 2,000개에 이르며, 관리 인력 부족 및 업무 위탁 시 예산증가 부담
하남시 (2024.12.30.) ²⁾	• 안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승인 등) 관련 -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는 우후죽순으로 건립될 수 있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방안을 그대로 준용하기엔 부적합 - 아울러 몇천~몇만 개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 호실을 1명이 담당하는 지자체가 수시로 입주 및 퇴거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처 불가함 - 따라서 입주 승인 권한을 지식산업센터 관리기관에게 일임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는 해당 관리기관 교육 및 감독 권한 부여(관리기관은 교육 이수 의무 부여)하여 관리함이 적절함

자료: 1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22773호) 검토보고(2023.9.)

2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6615호) 검토보고(2025.2.)

수행할 수 있는 시·군·구가 있는 반면 추가적인 인력 배치를 필요로 하는 시·군·구도 있을 수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이 상이하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가정하여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아울러,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, 신고 수리 및 확인·점검 업무를 안 제51조제3항⁷⁾에 따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위탁사업비 추계를 위하여 입주업체 현황 자료 등이 필요하나,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부재하므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－ 참고로,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는 관리기관과 별도의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입주업체 수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수탁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범위를 산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출하였음

- 이에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·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주·공장설립·사업개시·임대에 대한 신고 및 승인 신청 의무를 신설하고 입주업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데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* [참고자료] 지식산업센터 설립·운영 현황

7) 안 제5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] 지식산업센터 설립·운영 현황

연도별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현황(2024년 12월 기준)

(단위: 건)

연도	~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합계
건수	952	104	108	113	150	77	41	1,545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팩토리온(factoryon.go.kr)

전국 시·도별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현황(2024년 12월 기준)

(단위: 건)

시·도	설립승인	시·도	설립승인
강원특별자치도	21	세종특별자치시	3
경기도	717	울산광역시	7
경상남도	32	인천광역시	81
경상북도	20	전라남도	18
광주광역시	34	전북특별자치도	20
대구광역시	37	제주특별자치도	6
대전광역시	14	충청남도	36
부산광역시	72	충청북도	34
서울특별시	393	합계	1,545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산업단지 등 입지별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현황(2024년 12월 기준)

(단위: 건)

구분	계획입지	개별입지	기타	합계
설립승인	603	938	4 ¹⁾	1,545

주: 1) 자유무역지역 4건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